

##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

포항시에서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하기 위해 『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』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2일  
포항시장

### 1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시 보조금 지원
- 사업기간 : 2024. 3. ~ 2024. 12.
- 지원대상 : 전기자동차 소유자(또는 '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)
- 지원예산 : 91,783천원(91기 정도) ※ 사업량은 충전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지원금액 : 최대 100만원/기
- 신청기간 : 2024. 4. 1. ~ 2024. 4. 15.

### 2 지원대상자

- 전기자동차 소유자(또는 '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)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  - 신청일 기준 포항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함
  -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함
  - 타기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음
  - 설치 예정 장소에 완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
  - 포항시에 지방세, 세외수입,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음

### 3 선정방법

- 선정순위 적용하여 접수순 선정

|     |  |
|-----|--|
| 1순위 | 우선순위 해당자[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 이하), 상이·독립유공자, 다자녀가구] |
| 2순위 | 단독주택   |
| 3순위 | 사업장  |
| 4순위 | 충전기를 개방(공동사용)하는 경우(원룸 등)                     |

### 4 지원대상 충전기

-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에 등록된 수행기관의 충전기
- 도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
- 기타 비공용충전기 전문 생산 업체에서 제작된 충전기
  - 단, 다음 사업수행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것
    -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 - KC인증서 - 전기안전인증서
    - 책임배상물 보험 가입 - 국내제조 제품

### 5 지원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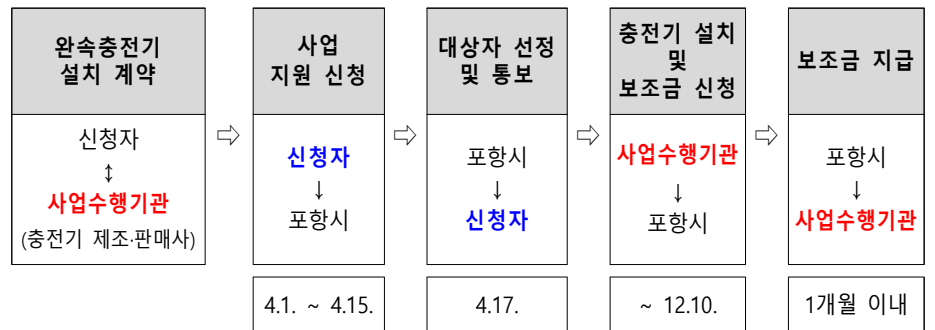
- 완속충전기 구매·설치 비용의 50% 한도 내에서 지원

< 완속 충전기 보조금 지원 단가 (최대 지원금액) >

(단위 : 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|    | 1기           | 2~5기 | 6기 이상 |    |
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|
| 완속충전기<br>(C타입) | AC | 11kW이상       | 100  | 90    | 75 |
|                |    | 7kW이상~11kW미만 | 90   | 80    | 70 |
| 키오스크 충전기       |    | 90(2기)       |      |       |    |
| 전력분배형 충전기(7kW) |    | 70(2기)       |      |       |    |
| 과금형콘센트         |    | 30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|

### 6 사업절차



※ 사업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p.5~6 [참고자료] 확인

## 7 기타사항

- 충전기 설치장소는 포항시 관내로 한함
- 전기자동차 소유 대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,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의무 설치 대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
- 충전기 설치장소는 이면도로 및 타인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 등이 아닌 적합한 주차공간이어야 함
- 개방(공용사용) 충전기의 경우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며, 현장 확인을 통해 개방 여부 확인 시 설치 부지가 개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수행기관은 「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 지침(환경부)」에서 정하는 현장조사, 설계도서 작성, 설치 공사 등 절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함
- 설치한 충전기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유지·관리 등의 책임이 있으나, 충전기 설치 후 최소 2년간 제품하자 등 사후품질 책임은 충전기 제조사에 있음
- 충전기 사용 요금은 사업수행기관이 공공 완속충전기 사용 요금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함
- 충전시설 소유자가 설치일로부터 2년 이내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포항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포항시는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(다만, 천재지변·화재·건물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 제외)

<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(%)>

| 사용기간   | 6개월 미만 | 6개월 이상<br>12개월 미만 | 12개월 이상<br>18개월 미만 | 18개월 이상<br>24개월 미만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환수율(%) | 70     | 50                | 30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|

-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,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 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
-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대상여부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충전기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충전기 수량, 제품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포항시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

-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희망자에게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
- 구조물 및 제품의 A/S 주체는 사업수행기관이므로 신청자와 계약체결 시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함
- 국가 또는 한전의 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며, 추후 중복 신청 발견 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
- 충전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포항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사업수행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
-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「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 지침(환경부)」, 「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설치·운영 및 보조금 업무처리지침(경상북도)」에 의하며 지침에 대한 해석은 포항시 의견에 따름
-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인 사유로 지원사업을 포기할 경우 전기자동차 “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포기서[서식9]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전기자동차 관련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환경정책과(☎054-270-3796)로 문의

**참고**

**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사업절차 상세**

**1 사업 지원 신청 (신청자→포항시)**

- 신청기간 : 2024. 4. 1. ~ 2024. 4. 15.
- ※ 신청기간 이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추가 공고 예정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  - 방문 : 포항시청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
  - 등기우편 : [37683]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(대잠동),  
환경정책과 완속충전기 담당자 앞
- 제출서류
  - 공통

- ①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[서식1]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 [서식2]
- ③ 완속충전기 설치 계약서
- ④ 현장점검 확인서 [서식3]
- ⑤ 전기자동차 자동차등록증
- ⑥ (개인)주민등록초본, (사업자)사업자등록증, (법인)등기부등본
- ⑦ 설치희망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
- ⑧ (설치희망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)
  -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부지 사용 승낙서 [서식4]
  -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- 우선순위 (해당사항 있을 시)

- ① 차상위 이하 계층 → 차상위 증명서(수급자 증명서)
- ② 장애인 →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
- ③ 국가유공자(상이, 독립 등) → 국가유공자 등록증
- ④ 다자녀(2006. 1. 1.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) → 가족관계 증명서

**2 대상자 선정 및 통보 (포항시→신청자)**

- 대상자 선정 후 개별 문자 메시지 통보 [2024. 4. 17.(수) 예정]

**3 충전기 설치 및 보조금 신청 (사업수행기관→포항시)**

- 신청기한 : 2024. 12. 10.(화)까지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  - 방문 : 포항시청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
  - 등기우편 : [37683]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(대잠동),  
환경정책과 완속충전기 담당자 앞
- 제출서류

- ①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 신청서 [서식5]
- ② 위임장 [서식6]
- ③ 설치완료 확인서 [서식7]
- ④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[서식8]
- ⑤ 사업자등록증(충전기 제조·판매사)
- ⑥ 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확인증
- ⑦ 행위신고 확인서 및 하자보증서
- ⑧ 세금계산서(설치공사내역서 포함)
- ⑨ 사업수행기관 통장사본
- ⑩ 완속충전기 취득세 납부 증명서
- ⑪ 사업수행기관 적격 확인 서류
  - 전기공사업 면허, KC인증서, 전기안전인증서,  
책임배상물 보험가입증서, 국내제조제품 등록증

**4 보조금 지급 (포항시→사업수행기관)**

-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









